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781
------------	------

2025년 6월 1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성흠제 의원 외 17명

나. 제안일자 : 2025년 5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흠제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 이

동편의 증진과 가족 간의 여가 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누적 대여 건수가 2억 건을 눈앞에 두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각 대상
별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자전거 이용시 다자녀가구에 대
한 이용요금 감면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전거 이용 활
성화 뿐만 아니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
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항목을 추가 신설함(안
제12조의3제2항8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6.3. ~ 2025.6.7.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 제출의견 : 원안가결¹⁾
 -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자녀 가족에게 따릉이 요금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공감함
 - ‘다자녀 가족’ 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행안부 시스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스템 개편 등에 약 2개월 소요 예정임. 또한 사업 추진시 복지부 사회보장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후 관련 방침 수립하여 사전협의 절차 진행 예정(2~6개월 소요)

1) 보행자전거과-7966호('25.6.5.) :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²⁾을 추가하여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와 함께 다자녀가구 혜택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24년 통계청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³⁾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⁴⁾은 약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유일한 1명 이하인 국가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약 0.58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임
-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⁵⁾을 통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거·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3)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통계청('25.2.26.)

4)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20.12.15.)

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⁶⁾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으며, 제6차⁷⁾ 및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⁸⁾를 통해 다자녀 가족의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 및 가족배려 주차구역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서울시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주택 2,504호 입주, 고령·난임부부 의료비와 시술비 지원, 출산가구 지원, 양육부담 완화 지원 등 다양한 저출생 해소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는 물론 정부와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해된다 할 것임
- 또한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요금, 시립체육시설, 미술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시 감면혜택을 추가하는 것은 서울시 정책 일관성 측면에도 필요한

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024년 1차 본위원회, '24.6.21.)

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24.12.)

- 3자녀 이상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기준 확대(막내나이 만 15세에서 만 18세로 상향)

- 임신부·영유아 등 교통약자와 동반가족 위한 ‘가족배려 주차구역’ 조성

- 인천공항 입국 다자녀·임산부 이용객 대상 짐배송 서비스 20%감면

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25.3.)

- 3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족의 경우, 가족 모두가 동행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 각각 최소 1인 동행하면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우선출국 서비스’ 도입 등

것으로 보임

다만,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따릉이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여를 하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 확인을 통한 실제 감면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행안부)등 시스템 연계·구축·보완 등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이후 사전에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해 기존 시민에게 정확한 감면 일정 및 정보제공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함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8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성함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성준,
남창진, 박승진, 봉양순,
송도호, 오금란, 유정희,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전병주,
최재란, 한 · 신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민 이동편의 증진과 가족 간의 여가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누적 대여건수가 2억 건을 눈앞에 두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대상별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자녀가구에 관한 요금감면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자전거 이용시 다자녀가구에 대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뿐만 아니라 출산 ·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항목을 추가 신설함 (안 제12조의3 제2항8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 후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생략)	제12조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
8. (생략)	<u>자녀 가족</u>
③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제2항제8호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제2항제8호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실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